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4일 (수) 오전 11시

2.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화로 532-2 성보화학 중앙연구소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약력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정연태 | 1972.01.10 | 현 한라산바이오 대표이사 현 성보화학(주) 사외이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х | × | x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성명 |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박완순 | 1955.07.19 | 전 성보화학(주) 대표이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x | x | x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1년 3월 14일 9시 ~ 2021년 3월 23일 17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성보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정 선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지성규

정관변경(안)

|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고 |
|-----------------------------|---------------------------------|------------------------------|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 |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① <좌 동> | |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 | - 상법 개정에 따른 조항 분리 및 내용 |
| 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 | 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 추가 |
| 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 하여야 한다. | |
| 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 | ③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u> | |
| <u>인, 본인</u> | 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 |
|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 |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 | |
| 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 | 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
| 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 |
|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 <u>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 | |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 | ④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 |
| 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 | |
| | 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 | |
| | 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 | |
| | 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 | |
| |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 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 |
|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 |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준용하지 아니 한다. | |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취임 후 3년내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 | - 기업경영에 필요한 조항내용 수정 |
| 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
| <u>까지로 한다.</u> | | |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 | ② <좌 동> | |
|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 |
| 부칙 | 제46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 | - 시행일 반영 |
| | | |
| | 부터 시행한다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 구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의 수) | 4(2) | 4(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원) | 1,000,000,000 | 1,000,000,000 |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에 관한 사항

| 구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1 | 1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원) | 50,000,000 | 50,000,000 |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3월 24일 개최하는 성보화학(주)의 제60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포함)에서 권유자 성보화학이 지정하는 (김정섭)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 주

4.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

| 구분 | 주주총회 목적사항 | | 찬성 | 반대 | 기권 |
|-----------------|--------------|------------------|----|----|----|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 | |
| 제1호 그건 |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정연태 (사외이사) | | | |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박완순 | | | |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은 위임합니다.
-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 항목 | 지시의 내용 |
|----|--------|
| | |

주주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1년 월 일 시